

22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※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 선정
 -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

선정 항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■ 공통적용 항목	70점	
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10점	상시근로자수 기준
②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0점	
③ 폭염 위험도 평가(매우 높음, 높음) 지역	10점	환경부 발표 RCP 4.5 기준 적용
④ 폭염 취약계층* 근로자 고용 사업장(근로자 1명당 2점) - 산재보험 가입 만 50세 이상(22.5.10일 기준) 근로자 수	최대 10점	
⑤ 폭염재난 취약 작업 사업장 * 건설업종(90515) * 농업(800**) 및 어업(700**) * 필수노동자 보유 사업장(배달종사자 및 환경미화원) - (택배·운수업) 운수부대서비스업(50005), 항만내의육상하역업(50008), 육상화물취급업(50010), 각종운수부대사업(50011), 화물운수업·택배업·퀵서비스업(50105~50111) -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90102)	10점	
⑥ "고열" 유해인자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사업장	20점	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30점	
⑦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①노사문화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 ⑦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 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 ⑩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	최대 10점	각 2점씩 * 파란색 글씨의 경우 사업장에서 인증(포상) 등 증빙서류 제출 시에 인정
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	10점	'21~'22년 참여업체
⑨ KOSHA-MS 인증,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	10점	
■ (가점) 서울남부지사 관할지역 가점항목	+30점	
①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	10점	
②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0점	
③ 서울남부지역 재해다발 위험업종	10점	단, 재해율 순위 10개 전 소업종 단위로 1점씩 차감
계		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적용 항목 순번(⑥→⑤→④→③→②→①) → 자율항목(⑨→⑧→⑦)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○ 재해율 상위 10개 업종 - 가점 ③번 항목 적용 업종

순위	소업종명
1	[50111] 콕서비스업
2	[21838] 전기도금업
3	[21822]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
4	[21841] 코팅사업
5	[21852] 기타유리제품제조업
6	[20002]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기타절임식료품제조업
7	[21840] 열처리사업
8	[50010] 육상화물취급업
9	[50106] 구역화물운수업
10	[50011] 각종운수부대사업